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052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일

발 의 자 : 정혜영 의원

1. 제안이유

반려견 산책 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활동 및 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연계사업 및 경비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 마. 포상(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하남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법 활동을 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반려견 순찰대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 ②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하남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3. 제7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 구축

4. 사회적 약자 대상(중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정서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반려견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 동물보호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8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